

# 공직자 등의 '외부강의 등' 신고 요령

## I 근거 규정

-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 및 「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5조
  - 공직자 등이 '외부강의 등'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
-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」 제11장
  - 외부강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·강의요청 등을 요구하는 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기관(부서)장<sup>1)</sup>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,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(授受) 금지

## II '외부강의 등' 신고의 개념

- 신고대상: 대가여부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'외부강의 등'<sup>2)</sup>
  - ※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인 경우 제외
- 신고내용: 출강일시, 요청기관, 요청사유, 대가금액 등
- 신고원칙: 사전신고
  -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외부강의 등 수행 금지
  - 외부강의 등 대가기준 상한액을 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
  - 상한액 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고, 초과 금액 반환
  - 대가를 받는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의 횟수 제한<sup>3)</sup>

1) 소속기관장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제2항에 의거, 각 기관에서 제정한 "위임전결규정"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·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,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.

2) 외부강의 등 :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발표·토론·심사·자문·평가 등을 말하며, 서면으로 자문·고문·평가·기고 등을 할 경우도 이에 포함됨

3)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검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횟수에서 제외

### III '외부강의 등' 유의사항

#### ● '외부강의 등' 사전 허가

- 근거: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 제10장 외부강의
- 처리요령
  -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(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  -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'외부강의 등' 을 허용
- 처리방법: 내부결재(서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)

#### ● '외부강의 등' 신고

- 근거: 「청탁금지법 제10조」 및 「전라북도공무원행동강령」 제15조
- 처리요령
  -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'외부강의 등' 은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(요청자가 국가,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)
  -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
  - 미리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
  -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
  - 「전라북도공무원행동강령」 별표 3에 정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
- 처리방법: NEIS 외부강의 등록

#### ● 복무 처리

- 근거: 국가(지방)공무원 복무 규정 등
- 처리요령
  - 업무 관련성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상 필요한 경우 출장 처리
  -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가·외출·조퇴 등으로 처리

## IV '외부강의 등' 신고 절차

<p><b>외부강의 등 요청</b> 【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한 정당한 '외부강의 등' 신청인가?】</p>	<p>NO</p>	<p>'외부강의 등' 불가</p>
<p>↓ yes</p>		
<p><b>외부강의 등 가능</b> 【다음 2가지 모두 해당하는가?】 - 관련 규정에 따른 '외부강의 등'의 형태 - 국가/지자체/ 그 소속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청한 '외부강의 등'</p>	<p>NO</p>	<p>'외부강의 등' 신고 생략</p>
<p>↓ yes</p>		
<p><b>'외부강의 등' 신고</b> 【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인가?】</p>	<p>NO</p>	<p>'외부강의 등' 신고만 해당</p>
<p>↓ yes</p>		
<p><b>'외부강의 등' 신고 + 복무처리</b> 【직무관련성이 있는가?】 (소속기관의 직무이며, 소속기관장이 판단)</p>	<p>NO</p>	<p>'외부강의 등' 신고 + 복무처리(연가 등)</p>
<p>↓ yes</p>		
<p><b>'외부강의 등' 신고 + 복무처리(출장)</b> 【대가로 여비를 받는가?】</p>	<p>NO</p>	<p>'외부강의 등' 신고 + 복무처리(출장)</p>
<p>↓ yes</p>		
<p>'외부강의 등' 신고 +복무(출장, 여비부지급)</p>		